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무기체계WBS 기반의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최신화)

2020. 12.

국방기술품질원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방4차산업융합센터 기술정보확산팀	팀장 봉하규	055-751-5520
	담당 최시영	055-751-5523
	담당 석광호	055-751-5521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명	1
2. 계약조건	1
3. 사업 배경 및 목적	1
4. 사업 내용 및 범위	2
5. 사업 추진체계	2
6. 사업 추진일정	2

II.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대상.....	3
2. 사업범위	3
3. 과업 세부내용	3
4. 산출물	5
5. 사업 수행지침	5

III.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7
2.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7
3. 제안서 평가기준	8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8
5. 협상대상 업체선정	9

IV. 제안안내

1. 제안 일반사항	10
2. 제안서 작성방법	11
3. 제안서 내용(목차)	12
4. 제안일정	13

※ 붙임

1. 제출자료 각종 양식	14
---------------------	----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무기체계WBS 기반의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최신화

2. 계약 조건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6개월
- 배정예산 : 1.1억 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시행주체 :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 기술정보확산팀)

3.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2007년도 최초 작성, 2010년도 최종 개정(Ver.2) 이후 약 9년 간 수 정 보완 되지 않은 국방기술표준분류체계 최신화 필요
- 국방 분야 연구개발 영역의 확장, 신기술 분야 증가, 융복합 기술 등을 수용하고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한 국방과학기술 분류체계의 보완 및 개선 필요
- 기존 기술중심의 분류와 무기체계 중심의 분류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기획, 핵심기술, 기술조사분석 등의 업무에 활용이 제한되므로 기술분류와 무기체계 WBS 분류기술 간의 연계성 확보 필요

○ 사업 목적

- ‘국방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정 또는 보완을 위해 현 분류체계의 대·중·소분류의 병합, 신설, 삭제 등 소요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방, 민간분야의 신기술, 융복합기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로의 재구조화
- 국방기술표준분류체계와 무기체계 분류 간 연계(안) 확보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4. 사업 내용 및 범위

-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재구조화 및 개정(안) 제시
- 무기체계 분류와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간 연계 모델 제시

5.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업무 분장
사업 총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4차산업융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조정 및 통제
사업 관리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정보확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일정관리, 이슈 및 위험 관리, 평가) • 업무분석 및 내용 품질 검토 • 사업추진 관련 대내·외 협조 • 완료 산출물 적합성 검사
사업 수행	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투입인력 관리 운영 • 산출물 작성 및 품질관리 • 최종 산출물 제출 • 검증 및 오류 시정

6. 사업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착수	사업자 선정/계약								
수행	○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재구조화 및 개정(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분류체계의 타당성 검토 및 분석 - 분류항목 정교화 및 세분화 -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안) 작성 및 제시 - 개정(안)에 대한 검증결과 작성 								
보고	○ 무기체계 분류와 국방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간 연계 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 분야별 대표무기의 선정 및 타당성 제시 - 무기체계 WBS 기반 소요기술 분류표 작성 - 무기체계 소요기술분류와 국방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의 연계 								
종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수정/보완, 사업결과 검수 및 인수								

II.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대상

- 가.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재구조화 및 개정(안) 제시
- 나. 무기체계 분류와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간 연계 모델 제시

2. 사업 범위

- 가.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재구조화 및 개정(안) 제시
 - 기존 분류체계의 타당성 검토 및 분석
 - 분류항목 정교화 및 세분화
 -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정(안) 작성 및 제시
 - 개정(안)에 대한 검증 결과 작성
- 나. 무기체계 분류와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간 연계 모델 제시
 - 무기체계 분야별 대표무기의 선정 및 타당성 제시
 - 무기체계 WBS 기반 소요기술 분류표 작성
 - 무기체계 소요기술 분류와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의 연계
 - 무기체계 분야별 WBS 기반 기술분류표(모델)의 운용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제시

3. 과업 세부내용

가. 국방과학표준분류체계 재구조화 및 개정(안) 제시

※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지침 별표2의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대분류(8건), 중분류(54건), 소분류(191건)로 구성됨

- 기존 분류체계의 타당성 검토 및 분석
 - 현 분류체계(대, 중, 소)와 국방/민간분야의 타 분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기술분류의 개정 소요 도출

※ 국방분야 : 국가합동군사전략서(JMS), 무기체계기술분류, 국방과학기술조사서, 핵심기술기획서, 국방과학기술 소요기획서 등

- ※ 민간분야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주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서 사용 중인 분류체계

 - 국방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MS)에 탑재된 연구개발 산출물 기술정보 분석을 통한 분류체계 개정 소요 도출
 - ※ 탑재자료 : 약 10,000건(무기체계R&D,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산출물 등)
 - 국방, 민간분야 최신기술, 융복합 기술 파악 및 분석 등을 통한 해당 기술이 적용 가능한 분류항목 작성
 - 분류항목 정교화 및 세분화
 - ※ 대분류를 1레벨, 중분류를 2레벨, 소분류를 3레벨로 정의
 - 도출된 개정 소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분류체계 항목의 병합, 삭제, 신설, 수정 등의 재구조화
 - 대, 중, 소분류 재구성 및 소소분류(4레벨) 및 추가 세분화(5레벨 등) 검토 반영
 - 8대 무기체계 분야별 WBS 기반의 소요기술 작성 및 분석을 통한 반영
 - ※ 8대 무기체계 :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감시·정찰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방호무기체계, 그 밖의 무기체계
 - ※ 참고자료 : 국방과학기술통합분류체계 연구 결과보고서, 무기체계 WBS(안) 52개, 국방과학기술조사서 등
 - 세분화 기술별 명세(정의, 범위 등) 작성
 -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정(안) 작성 및 제시
 - 도출된 개정 소요를 반영하여 재구조화한 전면 개정(안) 작성
 - 개정(안)에 대한 검증 결과 작성
 - 국방 및 민간의 각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소요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실효성, 신뢰성 등을 검증
- 나. 무기체계 분류와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간 연계 모델 제시
- 무기체계 분야별 대표무기의 선정 및 타당성 제시
 - ※ 분야별 대표무기 선정 시 별도 협의(분야별 2 ~ 3종 수준)
 - 무기체계 WBS 기반 소요기술 분류표 작성
 - 무기체계 WBS 단계별(10단계 내외) 부품의 소요기술 및 기술명세 작성

- 대표 무기체계의 WBS 단계별 기술분류표 작성
- 무기체계 소요기술 분류와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의 연계
 - 무기체계 WBS기반의 소요기술과 개정된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간 기술 연계표 작성 및 제시
- 무기체계 분야별 WBS 기반 기술분류표(모델)의 운용방안 및 향후 발전 방안제시

4.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
- 중간보고서는 제본하여 10부 및 전자파일(또는 CD)을 중간보고회 전 5일 이내 제출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는 제본하여 10부 및 CD 3매를 최종평가 전 7일 이내 제출하고, 연구와 관련된 모든 최종 산출물은 용역사업 완료 14일 이전에 제출

5. 사업수행지침

-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은 협상시 구체화하고, 계약 후 사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사업 참여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정기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1. 착수보고회의

- 제출 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납품시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중간보고회의

- 제출 문서 : 중간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업무범위의 중간 결과 포함
- 납품시기 : 중간평가 전 5일 이내

3. 최종보고회의

- 제출 문서 : 최종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들의 사업 수행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납품시기 : 계약 만료일 10일전

* 보고회 시기, 보고서 제출 부수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과제관리자는 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수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는 용역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컴퓨터 파일 등의 성과품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기품원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기품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성과품 반출은 불허
-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III.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구 분	방 식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2.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업체(기관)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3.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 등급					평가 점수	비고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과제 수행 계획/방법/효과 (50점)	과제수행 계획	·수행 계획의 우수성 ·과제목표 달성을 가능성	20	20~19	18~17	16~15	14~13	12 이하		
	과제수행 절차·방법의 적절성	·수행방법·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과제추진 일정의 적절성	20	20~19	18~17	16~15	14~13	12 이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10	10	9	8	7	6		
과제 수행 능력 (40점)	과제수행자의 능력/경력	·해당분야 전문성 보유 여부 ·각종 과제수행 실적 및 경험	20	20~19	18~17	16~15	14~13	12 이하		
	과제수행팀 구성의 적절성	·참여인력 구성의 적합성 ·과제관련 전문지식 보유여부	20	20~19	18~17	16~15	14~13	12 이하		
	과제수행 실적	·2년 이내 우수 과제수행자	+2						해당시 가점부여	
	과제수행 부적격자	·부실·불성실 과제수행 ·과제 수행 실패	-5 -10						해당시 감점부여	
입찰 가격 (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개별 위원은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아니함)									
총 점			100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국방기술품질원 자체 제안서 평가 실시(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세부 기준은 위 3항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협상대상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을 생략함
- 협상 대상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IV. 제안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구축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708호)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국방기술품질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 사용권 등 지적소유권은 본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국방기술품질원에 귀속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그 관련자료 및 결과는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기관(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내용(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 (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번호 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50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추가할 수 있다.
- 모든 제안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해설을 해야하며,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 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한다.

3. 제안서 내용(목차)

작성 항 목	세부 목차
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II. 전략 및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 기술 4. 사업추진 방법론
III. 사업 수행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재구조화 및 개정(안) 제시 2.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 무기체계분류 간 연계 모델 제시
IV. 사업 관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전문인력 운영
V.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유지 2. 신뢰도 및 정확성 확보 3. 교육훈련(필요시)
VI.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생협력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VII. 기타사항	(필요 시)

4. 제안 일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용역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 설명회 : 생략
- 제안서 평가회 : 별도 통보
 -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참가자에 한 해 별도 통보
- 제출서류 : 입찰 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
 - 입찰관련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제출방법 및 일정은 용역입찰공고문에 따름
- 기타 사항
 -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제출자료 각종 양식

- 1) 일반현황 및 연혁
- 2) 최근 3년간 경영실태
- 3) 수행실적 총괄표
- 4)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
- 5) 정보 비공개 동의서
- 6) 서약서
-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시 제출
- 8) 신용 평가 등급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것

<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양식 2>

최근 3년간 경영 실태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SI 부문 매출액	S/W				
	H/W				
	시스템 개발				
	컨설팅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불임으로 반드시 첨부 바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양식 3>

수행실적 종괄표

일련 번호	사업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수급형태 (지분율)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 제안사가 수행한 사업 중 본 사업과 유관한(유사사업 인정범위 내) 수행실적만 기재
-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수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 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양식 4>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번호	수용 여부	제안서 항목번호	제안서 쪽

<양식 5>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무기체계WBS 기반의‘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 최신화」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국방기술품질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양식 6>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원에서 추진하는 「무기체계WBS 기반의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최신화」 용역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약관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0. . .

서 약 자 : 대 표 (인)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귀하

<양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